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5가합54790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6. 7. 19.

판결 선고2016. 10. 11.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5,026,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12. 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215,062,709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15,062,709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

가. 인정 사실

1)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2011. 6. 8. 보증원금 297,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8.부터 2012. 6. 7.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과, 2013. 6. 14.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14.부터 2014. 6. 13.까지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고, 2011. 6. 8.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3. 6. 14.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4) 피고 A가 2014. 12. 22.부터 이자를 연체하던 중 2015. 1. 15. 위 대출 원금 변제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4.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35,185,180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301,145,562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하여 134,039,618원)을 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15. 4. 14. 피고 A로부터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으로 435,026,770원이 남아있다.

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고, 일부 회수된 대위변제금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5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증의 각 기재, 피고 A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435,026,822원(= 대위변제금 435,026,770원 + 확정된 지연손해금 52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5. 12.

5.까지는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 B는 2009. 8. 20. 피고 A에게 1억 2,000만 원을 이자 연5%, 변제기 2011. 8. 2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이후 피고 A는 이자를 연체하다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했고, 피고 B는 피고 A로부터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위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3) 이에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11. 28. 피고 B와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6,000만 원을 피고 B가 인수하고,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은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 B가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12. 9. 접수 제176289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국민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피고 A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A가 2014. 12. 22.부터 이자를 연체하던 중 2015. 1. 15.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4. 14.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35,185,18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 A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피고 B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다가 변제기인 2011. 8. 20.까지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 B는 피고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2014. 11. 28.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 B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연체된 카드대금, 은행대출이자 등을 갚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피고 A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실제로 원고가 2015. 4. 14. 대위변제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9,600,000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담보채권 259,937,291원이 변제되어 말소된 사실, 변론 종결일과 가까운 2016. 5. 경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50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변론 종결일 현재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15,062,709원(= 505,000,000원 - 259,937,291원 - 30,000,000원1))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215,062,7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B의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해서 선의이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3)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 B는 피고 A의 조카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당시 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점, 피고 B는 피고 A가 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을 연체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피고 A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범준

판사강민정

판사강동훈

별지

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지급한 3,000만 원 역시 공제한다.